

#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히며, 양 기관의 정보교류와 학술 협력 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하 '양 기관' 이라 한다)의 학술·연구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 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1. 공동 연구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학술대회 개최
2.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3. 교육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
4. 각종 국가시험의 출제·시행·채점의 공동 협력
5. 국가수준 기초학력 연구·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비밀엄수)**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또한 유효 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제6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협약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이 해지된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3. 단, 이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효력발생) 양 기관은 협약서에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며,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24. 9. 23.



서울교육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신호

장신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오승걸

오승걸